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교통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원희룡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최근 대여사업용 자동차와 관련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교통안전 위험요인 조사 및 관계법령의 위반여부 등을 점검,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(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)

- 1) 대여사업용 자동차와 관련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(버스·택시)와 같이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교통안전 위험요인 조사 및 관계법령의 위반 여부 등을 점검, 시정하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재입법예고(2022.5.31.~2022.7.28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예정

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”를 “각 호의 자가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(이하 “자동차대여사업자”라 한다)

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을 “구분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한 교통수단의 경우 :

다음 각 목의 교통사고

가. 1건의 사고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

나. 1건의 사고로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

다.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별표 3의2에 따른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교통사고

2.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유한 교통수단의 경우 : 자동차대여사업자가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4조의2제2항부터 제4항 및 제84조제1

항의 규정을 위반 또는 자동차 정비 불량으로 발생한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0조(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) ① (생략) ② 법 제33조제6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한 교통수단을 말한다. 1. (생략) <u><신설></u> 2. (생략) ③ 법 제33조제6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말한다. 1. 1건의 사고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2. 1건의 사고로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3.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제20조(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 각 호의 자가 ----- ----- ----. 1. (현행과 같음) 1의2. 「 <u>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</u> 」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(이하 “ <u>자동차대여사업자</u> ”라 한다) 2.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구분 에 따른 ----- ----. 1.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한 교통수단의 경우 : 다음 각 목의 교통사고 가. 1건의 사고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

<u>당하는 자의 별표 3의2에 따른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교통사고</u> <u><신 설></u> ④ ~ ⑤ (생 략)	<u>나. 1건의 사고로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</u> <u>다.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별표 3의2에 따른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교통사고</u> <u>2.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유한 교통수단의 경우 : 자동차대여사업자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4조의2제2항부터 제4항 및 제8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 또는 자동차 정비 불량으로 발생한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</u> ④ ~ ⑤ (현행과 같음)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822